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4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윤준병・박민규・조계원

정동영・황명선・박용갑

강준현 • 안호영 • 민병덕

신영대 · 김태선 · 서영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외하고는 경호구역 지정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危害)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통 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 금지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 행사' 및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의"를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호업무의"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로, "판단되는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을 "처장과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력 행사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구속·압수·수색·체포 등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제1항 중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을 "제18조 제1항을"로, "사람은 5년"을 "사람은 7년"으로, "금고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를 "금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해를 끼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 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 ----등 헌법과 법률에서 동을 말한다.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되는 경우에 한하여----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u>소</u>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u>처</u>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장과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 는 아니 된다. 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신 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

<신 설>

② (생략)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제21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을--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위 또는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력 행 사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에 대 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구속 • 압 수・수색・체포 등을 방해하 는 행위
- ② (현행과 같음)

----사람은 7년---------금고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 직<u>무를 수행한 자</u>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
	해를 끼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